#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50

발의연월일: 2021. 5. 17.

발 의 자:최연숙·권영세·고영인

곽상도 · 홍석준 · 이채익

이수진(비) ・이태규 ・성일종

권은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, 우수입업소 등록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있음.

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 정임.

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,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비대면 조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 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 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·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2(해외제조업소에 대한
	비대면 조사) 식품의약품안전
	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
	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 및 제
	7조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
	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외제
	조업소에 대하여 총리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
	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
	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
	<u>다.</u>